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1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 박희승 · 윤준병 · 한병도

정진욱 • 박상혁 • 서영석

한민수 · 김한규 · 박민규

김남희 • 이성윤 • 김정호

임미애 • 민병덕 • 김성환

백혜런 • 정성호 • 김현정

위성곤 • 서미화 • 김영호

서영교・소병훈・한정애

어기구 • 주철현 • 황명선

최기상 · 강선우 · 안규백

이수진 • 위성락 • 이춘석

김남근 • 박범계 • 신영대

조인철 · 신정훈 · 김 윤

임오경 · 이광희 · 안호영

서삼석 • 복기왕 • 박홍배

민형배 · 정준호 · 박지원

이개호 • 진성준 • 김영진

김교흥 · 김준혁 · 김영배

임광현 · 안도걸 · 윤호중

전진숙 · 강득구 · 장종태

강준현 • 이원택 • 오세희

문진석 • 이재정 • 김태년

김민석·김 현·안태준 추미애·윤후덕 의원 (7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역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담

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함.

이에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 료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 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여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 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 1)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함.
-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3)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로 구성함.
- 4) 학교의 장(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함.
- 5) 이사(임기 2년), 감사(임기 3년), 이사회(이사장, 구성 및 기능)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함.
- 6) 교직원은 정관에 따라 총장이 임면하고, 교직원의 자격·임면· 복무 및 징계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함.
- 다.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1)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음.
 - 2)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과정별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 3) 입학자격, 학생선발 방법 등을 규정함.
 - 4) 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함.
 - 5)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

- 라. 공공의 양성 및 지원(안 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함.
 - 2)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 복무 기간에서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함.
 - 3)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 복무의사의 의무복무 기관에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을 정함.
 - 4) 의무복무 실적 보고의무 및 매년 총장의 졸업생 실태 파악 의무를 규정함.
 - 5) 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보건의 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우선 채용 및 국제기구 파견 우선 선발 근 거를 둠.
 - 6)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함.
 - 7) 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허용 근 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확보 필요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8)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근거를 두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비, 운영비, 학비등을 지원하도록 함.
 - 10) 법인회계의 설치, 예ㆍ결산서 제출 및 공시의무를 규정함.

- 마. 지도・감독 및 벌칙(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 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를 말한다.
 - 2.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4조(법인격)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교육이념)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모든 국민이 어느 곳에서나 지역 과 경제적 차별 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육체적·정신 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며 감염병 등 보건 위기 시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할 공공보건의료의 인재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 제6조(설립등기)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정관)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7.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8.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1.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②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임원)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총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총장과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9조(총장)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공공보건의료대학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이사로 본다.
 -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1. 총장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 4.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 5.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1명
 - 6. 그 밖에 의학교육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
 -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사회)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 거나 감사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⑧ 그 밖에 이사회 소집 등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사항
 - 4. 예산 · 결산 및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

에 관한 사항

-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6. 교육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10. 이 법이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교직원 등)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 ②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 ③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④ 공공보건의료대학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 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 교법」을 준용한다.

제2장 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제17조(대학 및 대학원의 설치)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 둘 수 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 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한다.
- ②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 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교육 및 학위과정 등)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제5조의 교육이념 및 의학 교육과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 등에 따라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19조(학위의 수여) 총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 제20조(입학자격)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 교육법」 제33조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21조(학생선발)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2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 ②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1.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 자를 포함한다)
- 2.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 ③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 ④ 제2항과 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전형의 방법, 학생정원, 학생선발 일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학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전액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22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 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26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만, 제32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질병, 심신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때에는 반환금을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총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받은 사람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 반환금의 납부,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사면허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같은 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제3장 공공의 양성 및 지원

- 제25조(교육·실습기관)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 ② 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실습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지역 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는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

상수련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제2항의 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보조 및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의무복무) ① 제19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의사"라 한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1.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수런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공공보건의료기관
 - 2. 보건복지부
 - 3. 질병관리본부
 - 4. 시 · 도
 -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관련 국제 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 관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28조(의무복무 기관에 배치 등) ① 의무복무의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장(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의사는 선발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및 배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의무복무의사가 근무할 지역 및 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배치된 의무복무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 기관의 보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의사의 배치의 시기,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의무복무 지역의 변경 등) ① 시·도에 배치된 의무복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역을 다른 시·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배치된 의무복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제27조제1항 각 호 중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배치기관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배치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의무복무 중인 의사의 근무 지역 및 기관을 동일한 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배치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

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무복무의사를 다른 지역의 의무복무 기관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내의 파견명령은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의무복무의사의 파견을 명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근무지역의 변경 및 파견의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하 "의무복무기관장"이라 한다)은 의무복무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의무복무의사는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의사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공공보건의료대학 총장은 매년 졸업생 조사를 통하여 의무복무를 포함한 졸업생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관장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생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제31조(의무복무의사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배치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제32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 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 제3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 의료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수 없다.
- ④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 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건물 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 료대학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

- 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36조(수익사업 등)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 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수 있으며,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 및 학비등을 지원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학비등의 보조 및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8조(법인회계 등) ①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 회계를 설치하며,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다.

- ②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3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 제40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위 과정의 학생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1조(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감독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 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아닌 자는 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3조(「민법」의 준용) 공공보건의료대학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과태료) ① 제42조를 위반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원 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 당시의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준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부지매입 및 설립준비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대학의 교원
 - 1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직원 및 조교
 - ②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으 로 한다.